#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숭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41 발의연월일: 2024. 7. 5.

발 의 자: 백승아 · 박홍배 · 송옥주

박홍근 · 김용민 · 박지원

박해철 · 김남희 · 김남근

복기왕・김성환・조 국

정진욱 · 모경종 · 문정복

서미화 · 임미애 · 이재관

허 영·오세희·김 윤

김한규 · 양부남 · 서영교

이기헌 · 정준호 · 이해식

민형배・김 현・이재강

강준현 • 손명수 • 정일영

박지혜 • 박민규 • 김문수

김준혁 • 추미애 • 진선미

김영호 • 정을호 • 고민정

이수진 • 황명선 • 문금주

노종면 · 송재봉 · 윤종군

박선원 • 박용갑 의원

(509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근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부고시 등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부고시에서는 학생생활지도의 내용 중 긴급 상황 시 학생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물리적 제지와 학생 분리는 해당 학생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음.

또한,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가 학교 현장에서 실질 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이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에 필요한 지원 규정을 마련함 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 및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제3항·제4항 및 제20조의4 신 설 등). 법률 제 호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청"을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8조의4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급 담임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의 의견을 들어 해당학생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행동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록 하고,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이하 이 조에서 "지원대상학생"이라 한다)에게 치료 권고, 상담 및 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지원대상학생의 보호자는 치료, 상담 및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지원의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을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와 제2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리적 제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긴급 상황의 예방, 대응, 후속 조치 등을 위해 필요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0조의4(학생에 대한 분리조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이하 "분리조치"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분리조치를 거부하거나 여러 차례 분리조치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청에 학생을 인계하여야 한다.
  - ③ 교원은 분리조치를 한 경우 분리조치 일시 및 경위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분리조치된 학생을 위하여 별도의 공간 및 전담 인력을 두고, 해당 학생에 대한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인계된 학생을 위한 치료, 상담 및 학습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분리조치에 필요한 경비 및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정당한 분리조치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⑧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매년 분리조치 운영실태를 점검·조사· 감독하고, 제6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리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학생ㆍ기관ㆍ학교 평가) ①	제9조(학생ㆍ기관ㆍ학교 평가)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행정을	2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특별자치도 <u>교육청</u> 과 그	<u>교육청(이하"교육청"</u>		
관할하는 학교를 평가할 수 있	<u>이라 한다)</u>		
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① · 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③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		
	<u>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급 담임</u>		
	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의 의		
	견을 들어 해당 학생으로 하여		
	금 아동·청소년의 정신건 <u>강</u>		
	및 행동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		
	록 하고,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이하 이 조에서 "지		
	원대상학생"이라 한다)에게 치		
	료 권고, 상담 및 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지		

<신 설>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생 략)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 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원대상학생의 보호자는 치료, 상담 및 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지원의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현행과 같 음)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수 있다. 이 경우 물리적 제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긴급 상황의 예방, 대응, 후속 조치 등을 위해 필요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와 제2항에 따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 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 설>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른 물리적 제지에 대해서는---

제20조의4(학생에 대한 분리조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 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이하 "분리조치"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분리조치를 거 부하거나 여러 차례 분리조치 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 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 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 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 다. 다만, 보호자에게 학생 인 계를 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청 에 학생을 인계하여야 한다.
- ③ 교원은 분리조치를 한 경우 분리조치 일시 및 경위를 학교 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

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 게 알려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분리조치된 학생을 위하여 별도의 공간 및 전담 인력을 두고, 해당 학생에 대한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인계된 학생을 위한 치료, 상담 및 학습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분 리조치에 필요한 경비 및 인력 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정당한 분리조치에 대해서는 「아동복 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 지 아니한다.
- ⑧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매년 분리조치 운영실태를 점검 ·조사·감독하고, 제6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리조치에

<u>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u> <u>정한다.</u>